

학술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와 같은 종합 학술대회를 기획, 진행,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종합 학술대회 개최 일정 및 장소결정, 학술 논문접수 및 심사, 대회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, 기타 종합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2명,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)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